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84
----------	------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9일

발 의 자 : 서운기, 김종욱, 양준욱, 김선갑,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양천), 김광수(도봉),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찬중,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홍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기희, 김광수(노원), 김용석(서초), 유 청, 최관술, 김경자(강서) 의원 (79명)

1. 주 문

-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고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는 범위는 워낙 다양해지고 이미 산업 사회의 접근법으로는 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사회에 청년의 구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임.
- 서울시는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활동지원 사업 도입을 통해 최장 6개월 매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현금 50만원만 강조하면서 청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 다면서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 8월4일에는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의결 무효청구 소송과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를 통해 청년들의 활동지 원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 나. 기타사항 :

4. 이 송 처

-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구직 청년에 대한 긴급 지원 정책이다. 최장 6개월 매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며, 금전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50만원만 강조하면서 청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지원자의 활동계획서에 적혀있는 구직 의지도,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는 청년의 절박함도 보지 않고, 낯선 언어로 정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8.4일에는 서울시 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하였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추진안을 함께 만들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결국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한 청년구직수당 지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란 현실에서 75억 시범사업을 명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작년 12월 22일에 의결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전체 청년관련 예산 1,298억 중 75억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이고 서울시의회도 함께 진행과정을 심사하면서 내년 사업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전례 없는 직권취소를 감행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고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의 긴급한 구직 지원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6.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